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49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박성훈 · 박충권 · 김재섭
김석기 · 김승수 · 최은석
이인선 · 이달희 · 김기현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금지청구 등) ①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12조의5, 제14조의2제6항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항의 죄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제4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의 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 115조를 준용한다. <u><신 설></u>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부터 제11 5조까지-----. <u>제37조의3(금지청구 등) ① 가맹 사업거래에 관하여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제3항, 제 12조의5, 제14조의2제6항의 위 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 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법 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 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 방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u>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u>

제41조(벌칙)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④ · ⑤ (생략)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u>3항을 준용한다.</u> 제41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⑤ <u>제4항의 죄는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2조(양벌규정) ----- ----- ----- ----- --제41조(제4항은 제외한다)-- ----- -----
---	---

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